

부산지방법원 2021. 12. 7 선고 2020가단34401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

담당변호사 류정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
담당변호사 전강우

변 론 종 결 2021. 11. 9.

판 결 선 고 2021. 12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부산 부산진구 C 대 107.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8, 4, 5, 6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ㄴ’
부분 2.1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‘ㄴ’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381,325원 및 2021. 12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,475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2. 24. 부산 부산진구 C 대 107.1㎡(이하 ‘원고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2016. 12. 28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2006. 7. 20. 부산 부산진구 D 대 80.3㎡(이하 ‘피고 토지’라 한다)와 그 지상 건물(이하 ‘피고 건물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6. 6. 30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2015. 10. 8. E 대 4㎡에 관하여 2015. 9. 17. 매매를 원인으로, 2017. 3. 16. F 대 3㎡에 관하여 2017. 3. 15.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E 토지 및 위 F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.

라. 피고는 2019. 5. 1.경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담장을 친 후 그 담장과 피고 건물 사이에 지붕을 덮어 블록 및 샌드위치판넬조 가건물(이하 ‘피고 가건물’이라 한다)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사용수익하고 있는데, 피고 가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, 4, 5, 6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ㄴ’ 부분 2.1㎡(이하 ‘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’이라 한다)를 침범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,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 지상의 피고 가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인도하고, 피고가 피고 가건물을 축조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무단 점유하기 시작한 2019. 5. 1.경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위 토지부분

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,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대한 임료가 2019. 5. 1.경부터 2019. 12. 31.까지는 86,100원, 2020. 1. 1.부터 2020. 12. 31.까지는 147,000원, 2021. 1. 1.부터 2021. 11. 30.까지는 148,225원이며, 이후로는 월 13,4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,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 지상에 축조된 피고 가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인도하고, 2019. 5. 1.경부터 2021. 11. 30.까지 발생한 확정된 임료 상당 부당이득 합계 381,325원(= 86,100원 + 147,000원 + 148,225원) 및 2021. 12. 1.부터 위 토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,47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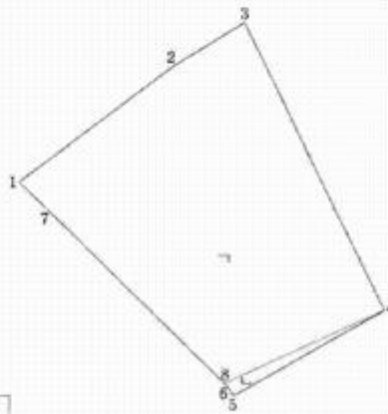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미진

감 정 도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

범 례	명 칭
——	지 적 선
——	현 황 선

감 정 내 역

지 번 부 호	선 명	면적(m ²)	비 고
	ㄱ 1,2,3,4,8,7,1 을 순차연결한 선	105.0	제외지
	ㄴ 8,4,5,6,8 을 순차연결한 선	2.1	사용부분

